

※ 번역문은 민원 신청을 위한 참고용이며, 기존의 한글 서식에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こちらの翻訳文は民願申請の参考用であり、提出時には既存の韓国語の書式に韓国語でご記入くださいますようお願いいたします。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65호서식] <개정 2024. 11. 14.>
■ 道路交通法施行規則 [別紙第65号書式] <改正2024年11月14日>

제1종 보통 []

자동차 운전면허 정기(수시) 적성검사 第1種 普通 [] 신청서

自動車運転免許定期 (随時) 適性検査 제2종 [] 申請書

第2種 []

※ 2쪽에 질병·신체에 관한 신고서가 있으므로 질의내용을 확인 후 적어서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중 1쪽)
※ 2ページに疾病・身体に関する申告書がありますので内容をご確認の上、記入して一緒に提出してください。 (全3ページ中1ページ)

접수번호 受付番号	접수일시 受付日時	발급일 発行日	처리기간 処理期間	즉시 即時	
신청인 申請人	성명(한글) 氏名 (ハングル)			사 진 写 真 3.5cm×4.5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배경 없이 6개월 내에 촬영한 것) 3.5cm×4.5cm (無帽、上半身、無 背景で、6カ月以内 に撮影したもの)	
	국적 国籍				
	운전면허증 발급 運転免許証の 発行	실물 実物 모바일 (희망하는 경우에만 선택) モバイル (希望する場 合のみ選択)	[]국문 []영문 []ハングル []英文 수령 방법 受取 方法 []방문 []등기우편 []訪問 []書留郵便 ※ 등기우편 발송시 발생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합니 다. ※ 書留郵便の発送にかか る費用は申請者の負担 となります。		
	성명 (영문)	성 氏			
	氏名 (英文)	이름 名			
※ 성명(영문)란은 정기적성검사 신청 시 영문운전면허증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만 작성합니다. ※ 氏名 (英文) 欄は定期適性検査の申請時に英文運転免許証の発行を申請する場合 のみ記入してください。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운전면허번호 運転免許番号		

주소 住所	
전화번호 電話番号	전자우편 メールアドレ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 및 제8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道路交通法施行規則」第82条第1項及び第84条第3項に基づき、上記のとおり申請書を提出します。

년 월 일
年 月 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申請人 (署名又は印)

한국도로교통공단 귀하
道路交通公団 殿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行政情報の共同利用に関する同意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업무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3쪽의 업무담당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여권정보의 경우 여권을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해야 합니다.

私は、本件の業務処理に関して、業務担当者が「電子政府法」第36条に基づく行政情報の共同利用を通じて、3ページの業務担当者確認事項を確認することに同意します。 *同意しない場合は、申請人が自ら関連書類を提出(旅券情報の場合、旅券を提示することも可)してください。

신청인 (서명 또는 인)
申請人 (署名又は印)

영수필증 첨부란 領収添付欄	수수료 手数料	담당 担当	부장 部長	장장 場長
	「도로교통법」 제139조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이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공고하는 금액 「道路交通法」第139条に基づき、道路交通公団が警察庁長の承認を受けて決定・公告する金額			

뒷면도 기재하여 주십시오
裏面も記入してくださ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질병(疾病) · 신체에 관한 신고서(응시자가 작성)

疾病・身体に関する申告書 (受検者が記入)

※ 아래 내용은 운전면허 허가에 있어 중요한 내용으로, 응시자가 직접 확인하신 후 해당 란에 체크(✓) 하시기 바랍니다.

※ 下記の内容は運転免許の許可において重要な内容です。受検者本人がご確認の上該当する欄にチェック (✓) してください。

귀하는 아래 해당하는 증세로 인하여 병(의)원에서 치료 또는 사법기관에 단속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下記の症状によって病院・医院で治療又は司法機関から取締りを受けたことがありますか?		응시자 受検者		귀하는 아래 신체장애 및 동등한 기능장애로 인해 병(의)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下記の身体障害及び同等の機能障害によって病院・医院で治療を受けたことがありますか?		
		있음 あり	없음 なし			
1	치매 認知症			해당 사항 없음 該当なし ()	 ()	 ()
2	정신분열병 統合失調症			 ()	 ()	 ()
3	분열형 정동장애(기분장애) 統合失調感情障害 (気分障害)			 ()	 ()	 ()
4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双極性障害 (躁うつ病)			 ()	 ()	 ()
5	재발성 우울장애 反復性うつ病			 ()	 ()	 ()
6	정신발육지연(지적장애) 精神遅滞 (知的障害)					
7	뇌전증 癲癇 (てんかん)					
8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알코올 麻薬, 大麻, 向精神薬, アルコール 依存症			 ()	 ()	 ()
9	그 밖의 정신질환 등 その他の精神障害等					
10	중심시야 20°내 암점 또는 반맹 中心視野20度以内に暗点又は 半盲			다리, 머리, 척추 등의 장애로 앉아 있을 수 없는 신체 장애 () 足、頭、脊椎等の不具合により 座ることができない身体障害 ()		
11	청력 聴力	정상 [] 40데시벨 이상 (보청기 사용) [] 40데시벨 미만 (보청기 사용) [] 正常 [] 40デシベル以上 (補聴器使用) [] 40デシベル未満 (補聴器使用) []				

년 월 일
年 月 日

응시자
受検者

(서명 또는 인)
(署名又は印)

- ※ 허위사실을 적어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도로교통법」 제152조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8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 ※ 虚偽の事実を記入して運転免許を取得した場合は、「道路交通法」第152条第3号に基づき1年以下の懲役又は300万ウォン以下の罰金刑に処され、「道路交通法」第93条第1項第8号に基づき運転免許が取り消されます。

판정관 의견 判定官の意見	적정 [] 정밀검사 필요 [] 適正 [] 要精密検査 []	판정관 判定官	(서명 또는 인) (署名又は印)
------------------	--	------------	----------------------

신 체 검 사 서 身体検査書

(적성검사 신청일부터 2년 내에 발급된 것으로서 시력검사결과가 포함된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진단서 또는 병역판정 신체 검사 결과 통보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종 보통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適性検査の申請日から2年以内に発行されたもので、視力検査結果が記載された健康診断の結果通知書、診断書又は兵役判定身体検査の結果通知書を提出することができます。但し、第1種普通免許を取得した者で、片目が見えない場合は医師の発行した診断書を提出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시 력 視力			그 밖의 의사소견 その他の医師の所見	검사결과 적격여부 検査結果の適否
양안 両眼	좌 左	우 右		

년 월 일
年 月 日

병 원 장 (인)
病 院 長 (印)

의사면허번호
医師免許番号

담당의사
担当医師

(서명 또는 인)
(署名又は印)

..... 담당의사 (인) 자르는 선
担当医師 (印) 切り取り線

운전면허 신체검사서(병원 보관용)

運転免許身体検査書（病院保管用）

성 명 氏名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주 소 住所			연락처 連絡先			
시 력 視力			그 밖의 의사소견 その他の医師の所見	검사결과 적격여부 検査結果の適否		
양안 両眼	좌 左	우 右				
			년 年	월 月	일 日	
			병 원 장 (인) 病 院 長 (印)			
의사면허번호 医師免許番号			담당의사 担当医師	(서명 또는 인) (署名又は印)		

신청인 제출서류 및 업무담당자 확인사항
申請人の提出書類及び業務担当者確認事項

신청인 제출서류 申請人が 提出する 書類	<p>1. 신분증명서(신분증명서는 확인 후 돌려드립니다) 1. 身分証明書 (身分証明書は確認後返却します)</p> <p>2. 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촬영된 컬러사진(3.5cm×4.5cm) 2장 2. 申請日から6カ月以内に撮影したカラー写真 (3.5cm×4.5cm) 2枚</p> <p>3. 질병·신체에 관한 신고서(정기적성검사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疾病・身体に関する申告書 (定期適性検査の場合のみ)</p> <p>4. 적성검사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검사하려는 적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適性検査の申請日から2年以内に発行された下記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書類で、検査する適 性に関する事項が記載されているもの (「電子政府法」第36条に基づく行政情報の共同利用を通 じて業務担当者が確認できる事項については記載されていなくても構いません)</p> <p>가. 신체검사서 イ. 身体検査書</p> <p>나.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ロ. 健康診断の結果通知書</p> <p>다.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제1종 보통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 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ハ. 医師が発行した診断書 (第1種普通免許を受けた者で、片目が見えない場合は必ず提出し なければなりません)</p> <p>라. 병역판정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 포함) 결과 통보서 ニ. 兵役判定身体検査 (現役兵志願に関する身体検査を含む) の結果通知書</p> <p>5.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委任状及び代理人の身分証明書 (代理申請する場合のみ)</p>
업무담당자 확인사항 業務担当者 確認事項	<p>1. 적성검사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실시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4 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내역 또는 「병역법」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 내역 중 시력에 관한 정보 1. 適性検査の申請日から2年以内に実施した「国民健康保険法」第52条又は「医療給付法」第14条に 基づく健康診断結果書、又は「兵役法」第11条に基づく兵役判定身体検査の結果書の視力に関する 情報</p>

	<p>2.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중 국내 체류지에 관한 정보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대한민국 안의 거소에 관한 정보</p> <p>2. 外国人又は在外同胞の場合、外国人登録事実証明の国内在留地に関する情報又は国内居所申告事実証明の韓国内の居所に関する情報</p> <p>3. 여권정보(영문운전면허증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여권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는 제외합니다)</p> <p>3. 旅券情報 (英文運転免許証を申請する場合のみ該当し、旅券を発給されたことがない場合は除く)</p>
--	---

※ 운전면허증은 국문 또는 영문 중 한 가지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 運転免許証はハングル又は英文のいずれかのみ発行できます。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 단서 및 제8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시를 갈음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원하는 경우 동의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道路交通法施行規則」第82条第1項但し書き及び第84条第3項但し書きに基づき、申請人が希望する場合は身分証明書の提示に代えて電子的方法で指紋情報を照会し、本人確認をすることができます。これを希望する場合は同意書を提出してください。

※ 적성검사(갱신)기간 등의 운전면허 정보를 전자우편 및 휴대전화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원하는 경우 동의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適性検査 (更新) 期間等の運転免許の情報を、電子メール及び携帯電話メッセージでお送りしています。これを希望する場合は同意書を提出してください。